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000호

서울동작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25호(2020. 12. 31.)로 사업계획 승인된 서울동작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같은법 제35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서울동작 행복주택 건설사업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(변경)
   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
 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  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 (변경없음)
   ○ 대 지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26
   ○ 대 지 면 적 : 20,719.00㎡
   ○ 연 면 적 : 22,070.23㎡
   ○ 사 업 규 모 : 아파트 4개동(행복주택 500세대, 10층 이하) 및 부대·복리시설
   ○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
4. 사 업 비 (변경없음) : 102,813,400천원 (주택도시기금30,896,000천원)
5. 사업기간 (변경) : 기정 승인 고시일 ~ 2024. 12.
   변경 승인 고시일 ~ 2027. 06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(변경없음) : [붙임1]
7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(변경없음)
   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: [붙임2] (도면생략)
   나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음
8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, 동작구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(02-3416-3778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
[붙임1]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(변경없음)

일련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
		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
1	동작동	326	공원	41,852	40,614	동작구	-			
2	동작동	327	제방	7,140	1,606	서울특별시	-			
계				48,992	42,220					

[붙임2] (변경없음)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고시

Ⅰ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동작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동작동 326번지 일원	42,220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번호	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
Ⓐ	신설	동작 행복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	동작구 동작동 326번지 일원	42,220	• 당초 공원시설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및 공공시설(보훈회관, 수복기념관 등) 등의 복합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계		42,220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42,220	100.0	

※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임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①	동작구 동작동 326번지 일원	제1종 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42,220	• 행복주택 및 공공시설(보훈회관, 수복기념관 등) 등의 복합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공간시설

가) 공원

■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폐지	근 11-11	동작공원	근린공원	동작구 동작동 326	-	건고 제1981-145호 (1987.4.29.)	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근 11-11	공원	• 공원폐지 - 0㎡	• 행복주택 및 공공시설(보훈회관, 수복기념관 등) 등의 복합개발을 위하여 공원시설 폐지

2. 가구 ·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고
			획지 번호	위치	면적(㎡)	
-	A	42,220	1	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326	20,719	공동주택용지
-			2	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326	18,512	문화시설용지
-			-	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327	2,989	공공시설용지 (기존도로)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위치 (획지번호)	구분	계획내용	
-	A-1	용 도	허용용도	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 - 「주택법」에 의한 부대시설, 복리시설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			불허용도	- 허용용도 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30% 이하	
		용적률	• 150% 이하	
		배 치	•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	
-	A-2	용 도	허용용도	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 중 주차장
			불허용도	- 허용용도 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30% 이하	
		용적률	• 150% 이하	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목적	계획내용
-	A-1 A-2	공동차량 출입구간	• 공동주택용지와 문화시설용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차량 출입구간 설치	• 국립현충원 교차로 변 공동차량 출입구간 설치

Ⅱ.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: 게재생략

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